

 국토교통부	<h1>보도 설명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3. 30.(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 주거재생과	담당자	·과장 이소영, 사무관 김태웅 ·☎ (044) 201-3337, 3341	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 상 용적률과 층수의 기준을 준수하며,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### 【 관련 보도내용 (3.30. 매일경제) 】

- “가로주택 지으라면서 4층만 올리라니..

  - 2종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움
  -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서 층수나 용적률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상 “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”하기 위하여 지정된 1종일반주거지역의 취지를 고려하고,
-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또한,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84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.
-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㎡ 이하이면, 용적률은 가중평균으로 산출하고, 그 밖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,

-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m<sup>2</sup>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.
  
- 정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시의 체계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김태웅 사무관(☎ 044-201-49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